

광주광역시 서구 육교 홍보물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

1997년 5월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3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및제출자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5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6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(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 김대수)

가. 제안사유

-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적절한 활용과 육교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육교 이용 홍보물 설치, 절차, 방법, 제한 등의 적정을 기하고
-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 : 표시면적 1㎡당 1일 200원
- 제5조(허가범위) 문화, 예술, 대규모 종교행사, 체육진흥과 산업발전 행사 등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광태)

- 본 조례안은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대민활용도 제고와 불법홍보물 난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해석에 있어 동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11호에 의하면 육교는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및 장소에 해당됩니다.
- 그러나 동법제8조(적용배제)에 의하면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이나
②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4조와 동법 제8조에 의한 본 조례 설치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습니다.
- 다만 제8조의 해석에 있어 “국가 등의 공공목적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(공공법인포함)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이나 자치주민에게 주민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알리는 홍보(광고)에 한정 해석하여 보면, 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홍보(광고)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의미가 없습니다.
-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체육, 문화, 예술행사 등 비영리목적에 위한 내용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'95. 3. 31자 내무부 회신과 본 조례 제5조(허가범위)에서 정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
- 육교시설유지관리와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재원 확충과 육교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의 설치절차,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육교”라 함은 도로(고속도로를 제외한다)를 횡단하여 설치된 보행인 전용의 다리를 말하며, 철도 등에 설치된 육교와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육교 등은 제외한다.

제3조 (사용허가신청) ①광주광역시 서구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교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육교사용허가신청서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행사 등의 계획서 1부.
2. 홍보물의 도안(문안 및 색채가 표시된 원색도안 또는 천연색사진) 1부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설치 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 (사용허가)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 허가를 하는 때에는 “별지 제2호서식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, 홍보물 우측하단에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게시토록 한다. 이 경우 육교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광고물설치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홍보물의 내용이 제5조의 각호 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
2. 홍보물의 내용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
3. 홍보물과 육교규격의 일치 여부

②구청장은 육교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홍보물이 육교측면에 설치된 통과높이 표지판과 일부 도로교통표지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, 육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준수사항 “별표1”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.

③동일한 육교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서가 2건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. 다만, 신청이 겹치는 육교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용할 육교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육교에 갈음하여 다른 육교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육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육교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

⑤구청장은 허가전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육교별 현황을 제시하도록 한다.

제5조 (허가의 범위) 구청장은 홍보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문화,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
3. 체육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
4.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 (금지사항) 육교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
2.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
3.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외의 사항

제7조 (허가의 취소) 구청장은 육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육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 (설치수량의 제한) 동일한 행사를 위하여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의 수는 행사의 규모, 성격등을 판단하여 허가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정한다. 다만, 정부시책 및 시정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사용기간) ①홍보물설치를 위한 육교의 사용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정부시책 및 사전홍보 등 성격상 장기간의 설치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기간내에서 우선하여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용료 징수) ①육교사용허가는 한 개의 육교 양면중 단면을 1건으로 하며,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육교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구청장은 “별표2”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육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육교사용 개시일전까지 육교사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90%는 반환한다.

제11조 (사용료의 면제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
2.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

②제 1항의 경우 홍보물이 제5조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2조 (준용)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3조 (벌칙)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교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제14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, 부과징수절차) ①제13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“별표3”과 같다.

②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과태료의 징수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